

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1993.10.30, 1995.3.2>

(앞 면)
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운송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가신청서		처리 기간	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 및 요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인가신청서			7일
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대여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고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고서			
신청인	① 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② 주민등록번호	
	③ 주소	④ 전화번호	
⑤ 사업의 종류		⑥ 운행형태	
⑦ 적용 또는 사업구역			
⑧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			
⑦ 변경 사유			
<p> <input type="checkbox"/> 제8조 자동차운수사업법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5조의5 신청(신고)합니다.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</p> <p> 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교통부장관 <input type="checkbox"/> 귀 하 <input type="checkbox"/> 특별시장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광역시장 <input type="checkbox"/> <input type="checkbox"/> 도지사 <input type="checkbox"/> </p>			
구비서류		수수료	
1. 행정기관의 허가·인가 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		1,000원	
2. 운임·요금표 및 그의 신·구대비표(신·구 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) 1부.			

33331-22811민

210mm×297mm

'93.9.6.승인

(신문용지 54g/m²)

※이 신청서(신고서)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: 생략

○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35호(1994.11.19) 개정지시문

[뒷면 처리기관란중 "교통부의 지역교통기획과·화물과"를 "교통부의 지역교통과·화물운송과"로 한다.]